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1년 4월 25일

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·파생형)

집합투자규약 변경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
- 2 법시행령 개정(2010.06.13) 사항 반영
- 3 법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 (기준가격 공고·게시)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전   | 정정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          | 제4-2조(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① 이 신탁계약서 시행일 현재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로 한다.<br><이하 생략>  | 제4-2조(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① 이 신탁계약서 시행일 현재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THEAM으로 한다.<br><이하 현행과 동일 >   |
| 2. 법시행령 개정(2010.06.13) 사항 반영 | 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br>① < 생략 ><br>1. ~ 2. < 생략 ><br>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br>< 신설 ><br><br>② < 생략 ><br><br>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br>- 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br>① <생략><br>② 1.~5. 가.~나. <생략><br><신설><br>다. <생략> | 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br>① < 현행과 동일 ><br>1. ~ 2. < 현행과 동일 ><br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br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br>② < 현행과 동일 ><br>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br>- 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br>① <현행과 같음><br>② 1.~5. 가~나 <현행과 같음><br>다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라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마. <현행과 같음> |
| 3. 법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 | - 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br>① <생략><br>② 1.~5. 가 <생략><br>나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(단, 처음에 공고·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·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  | - 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br>① <생략><br>② 1.~5. 가 <생략><br>나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(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   |

## 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1년 4월 25일

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채권-파생형]

#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
- 2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- 3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전  | 정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1.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</b>       | - 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[업무의 위탁]<br>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: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|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: THEAM         |
| <b>2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</b> | -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<br>-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-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br>-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<br>- 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|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1년 4월 15일) |
| <b>3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b>           | 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| (신설)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      |

### 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
- 2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전   | 정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1.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변경</b>       | - 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<br>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: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: THEAM         |
| <b>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</b> | - 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<br>- 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br>-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- 제4부 1. 재무정보 |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1년 4월 15일) |